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6. 27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2020년 7월 본 조례 제정 이후,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실 태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 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주의를 보다 적극적으 로 환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발생 시 신고 조치 조항을 정비함(안 제5조)
-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(안 제11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조직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1조제1항(실태조사)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 무화함.

○ 검토 결과

- 직장 내 폭언, 따돌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,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(區)는 영등포구와 산하 출연기관 등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'20.7.9. 제정한 바 있음.
- 한편, 우리 구(區)는 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,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교육 등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임.
- 따라서, 이번 일부개정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장치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최근 붉어지고 있는 문제 사항이 반영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342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4. 5. .

발 의 자: 이규선 \ 김지연 \ 전승관

유승용 \ 우경란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가. 2020년 7월 본 조례 제정 이후,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 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음.

나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 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발생 시 신고 조치 조항을 정비함 (안 제5조)

나.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(안 제11조제1항)

3. 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근로기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6. 1. ~ 6. 5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합리적인 이유 없이"를 "직장 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목격하였을"을 "알게 된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공표할 수 있다"를 "공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	제5조(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
등)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<u>합리</u>	등) ① <u>직장</u>
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	<u> 내</u>
하여서는 아니 된다.	·.
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	2
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	
것을 <u>목격하였을</u> 경우 이를 간	알게 된
과하지 않아야 하며, 그 사실을	
신고할 수 있다.	
제11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구	제11조(실태조사) ①
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	
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	
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, 그	
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	
해 <u>공표할 수 있다</u> .	<u>공표하여야 한다</u>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